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265

제출년월일 : 2012. 06. 8.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안이유

○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 및 행정안전부 "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·인사 사무 처리지침(예규 제371호)" 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안 별표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직의 비율을 82%이상에서 85%이상으로 하고, 기능직의 비율은 16%이내에서 13%이내로 조정함.

나. 안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기능직 8급·9급이 각각 일반직 8급·9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비율을 조정함.

1. 일반직 공무원

구 분	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현재	1% 이내	7% 이내	24% 이내	34% 이내	25.3% 이내	8.7% 이상
	조정후	1% 이내	7% 이내	24% 이내	34% 이내	26.5% 이내	7.5% 이상
조정율		-	-	-	-	**1.2%**	**△1.2%**

2. 기능직 공무원

구 분		6급	7급	8급	9급
비율	현재	8% 이내	29.5% 이내	33% 이내	29.5% 이상
	조정후	8.7% 이내	32.3% 이내	27.5% 이내	31.5% 이상
조정율		0.7%	2.8%	**△5.5%**	2.0%

행정국 총무과 황유경 2012-06-05 11:28

다. 안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에서 일반직 계를 1,503명에서 1,522명으로, 일반직 6급 이하 계를 1,389명에서 1,408명으로 19명 증원하고, 지도직계를 10명에서 11명으로 지도사 1명을 증원하며, 기능직 계를 240명에서 220명으로 20명 감원함.

☐ 개 정 조 례 안 : 붙임

☐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☐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☐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☐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☐ 사전(입법)예고 결과 : 붙임

○ 입법예고 : 2012. 5. 11. ~ 5. 21.(11일간)

☐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○ 방침결정문(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 계획)

○ 현행 조례

행정국 총무과 황유경 2012-06-05 11:28

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별표 1,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제4조 중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안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총무과장 안 상 철
	계장·팀장 직위·성명	조직교육계장 정 명 현
	담 당 자 성명·전화	황 유 경 (행정 3108)

행정국 총무과 황유경 2012-06-05 11:28

[별표 1]

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

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·정무직
비율	85% 이상	13% 이내	2% 이내

※ 비고 :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1. 일반직 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1% 이내	7% 이내	24% 이내	34% 이내	26.5% 이내	7.5% 이상

2. 기능직 공무원

구분	6급	7급	8급	9급
비율	8.7% 이내	32.3% 이내	27.5% 이내	31.5% 이상

3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

4. 별정직 공무원

구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율	12% 이내	34% 이내	45% 이내	7% 이내	2% 이상

행정국 총무과 황유경 2012-06-05 11:28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(제3조관련)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계	**1,768**						
정무직 계	**1**	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**1,522**						
2급	1	1					
3급	-						
4급	13	5	1	2	3	2	
5급	100	34	3	6	18	14	25
6급이하 계	1,408						
별정직 계	**10**						
5급 상당	1	1					
6급상당이하 계	9						
연구직 계	**4**						
연구관	-						
연구사	4						
지도직계	**11**						
지도관	1			1			
지도사	10						
기능직 계	**220**						

행정국 총무과 황유경 2012-06-05 11:28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[별표 1]

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

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·정무직
비율	82% 이상	16% 이내	2% 이내

※ 비고 :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1. 일반직 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1% 이내	7% 이내	24% 이내	34% 이내	25.3% 이내	8.7% 이상

2. 기능직 공무원

구분	6급	7급	8급	9급
비율	8% 이내	29.5% 이내	33% 이내	29.5% 이상

3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

4. 별정직 공무원

구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율	12% 이내	34% 이내	45% 이내	7% 이내	2% 이상

개 정 안

[별표 1]

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

구분	일반직	기능직	별정직·정무직
비율	85% 이상	13% 이내	2% 이내

※ 비고 :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

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1. 일반직 공무원

구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율	1% 이내	7% 이내	24% 이내	34% 이내	26.5% 이내	7.5% 이상

2. 기능직 공무원

구분	6급	7급	8급	9급
비율	8.7% 이내	32.3% 이내	27.5% 이내	31.5% 이상

3.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

구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율	3% 이내	97% 이상	10% 이내	90% 이상

4. 별정직 공무원

구분	5급 상당 이상	6급 상당	7급 상당	8급 상당	9급 상당
비율	12% 이내	34% 이내	45% 이내	7% 이내	2% 이상

행정국 총무과 황유경 2012-06-05 11:28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계	1,768						
정무직 계	1	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503						
2급	1	1					
3급	-						
4급	13	5	1	2	3	2	
5급	100	34	3	6	18	14	25
6급이하 계	1,389						
별정직 계	9						
5급 상당	1	1					
6급상당이하 계	8						
연구직 계	4						
연구관	-						
연구사	4						
지도직계	10						
지도관	1			1			
지노사	9						
기능직 계	240						

개 정 안

[별표 3]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

직급별 \ 기관별	총계	본청	의회 사무국	직속기관	사업소	구	동
총계	1,768						
정무직 계	1						
시장	1	1					
일반직 계	1,522						
2급	1	1					
3급	-						
4급	13	5	1	2	3	2	
5급	97	35	3	6	14	14	25
6급이하 계	1,408						
별정직 계	9						
5급 상당	1	1					
6급상당이하 계	8						
연구직 계	4						
연구관	-						
연구사	4						
지도직계	11						
지도관	1			1			
지도사	10						
기능직 계	220						

행정국 총무과 황유경 2012-06-05 11:28